

#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

□ 제정 : 2021. 7. 30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 신고되는 내부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정함으로써 공익침해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내부공익신고(이하 “신고”라 한다)”란 본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본교 교직원에 의한 공익침해행위를 총장 또는 감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.
2. “공익침해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가.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- 나. 본교의 예산사용, 본교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본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본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-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## 제 2 장 신고 등의 접수 및 처리

**제3조(신고 등의 접수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.

1. 신고자가 별지 제1호 서식 ‘공익침해행위 신고서’를 제출한 경우
  2.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외부기관에 신고된 공익침해사항이 본교로 이첩된 경우
  3. 공익침해사항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제기되어 감사담당부서로 이첩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신고에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취지 및 이유, 신고대상과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,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보완 요구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된 날을 접수일로 한다.

**제4조(신고 사항의 확인)** ①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

4-2-46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

요청할 수 있다.

-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련 부서에 설명 또는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신고의 이첩)**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른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신고대상자 등의 의견진술)** ① 신고 사항을 처리하기 전에 신고대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- ② 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진술기회 부여 및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일이 촉박하거나 본인 이 원하는 경우 서면 통지 없이 할 수 있다.

**제7조(신고·확인 등의 편의 제공)** ① 신고자가 특정한 장소 또는 특별히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자가 요청한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.

- ② 신고자, 신고대상자, 관계자, 참고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비밀보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, 방문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- ③ 신고의 편의를 위해 감사담당부서 내에 신고를 위한 전화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8조(신고의 취소)**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취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을 때, 취소 이유가 타당한 경우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취소 이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신고 사항의 공익침해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고 사항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.

**제9조(신고 사항의 처리)** ①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, 총장은 신고 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정한다.

- ② 제1항의 결과는 결과처분서로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결과처분서의 내용 중 신고대상자, 관계자, 참고인, 관계 기관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신고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등

**제10조(비밀 보장의 공지)** 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신변보호 등을 받을 수 있음을 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

알려야 한다.

**제11조(신분 비밀 보장 등)** ①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신고자 등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감사담당부서의 직원 중 신고의 접수 및 조사를 전담할 직원을 임명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신고 사항의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사람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신고자 등의 성명, 사진, 근무처 등 인적사항
2. 신고자 등을 알 수 있는 신고서, 증거 등 신고.조사 관련 자료
3. 그 밖에 신고자 등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사항

**제12조(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)**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진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·행정적 불이익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이 규정의 신고 또는 진술 등으로 인해 본교의 공익침해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희망하는 근무부서에 우선 배치하고, 업적평정에서 우대하는 등 인사 등에서 배려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4-2-46 내부공익신고에 관한 규정

■ [별지 제1호 서식]

## 공익침해행위 신고서

접수일자	접수번호			처리기간	60일
신고자	이름		소속부서(학과)		
	주소				
	연락처		직위(급)		
피신고자	이름		소속부서(학과)		
	주소				
	연락처		직위(급)		
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					
공익신고 내용					
증거자료 등 첨부서류					

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.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신고자

(인 또는 서명)

### 수원과학대학교 귀하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